



교원양성위원회 운영규칙

규정번호	5-0-10
제정일자	2008.06.01
개정일자	2012.04.30
개정번호	Ver.4 총페이지 2
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동양미래대학교 교원양성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 라 한다)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능) 위원회는 교원자격검정 실시 및 교육과정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.

제3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장은 교학처장으로 하며 위원은 교무부처장 및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원으로 하되 위원 중 최소 1명 이상은 외부인사로서 총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.

제4조(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5조(위원의 임기)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 다만 당 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보직기간으로 한다.

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.

제6조(회의 및 의결) 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 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.

②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.

③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2인 이상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.

제7조(간사)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.

② 간사는 위원장이 임명한다.

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.

제8조(수당 등)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외부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9조(세부 운영사항) 이 규칙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.

부 칙

(1) (시행일) 이 규칙은 2008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1) (시행일) 이 규칙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1) (시행일) 이 규칙은 201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(2) (경과조치) 201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 규칙은 이 규칙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.

부 칙

(1) (시행일) 이 규칙은 2011년 5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1) (시행일) 이 규칙은 2012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.